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2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시정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력 약화 및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안건은 서울시 시정변화에 따른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폐지를 명시함.
- 검토 결과

- 본 안건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민·관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협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2017. 6. 1.)된 바 있음.
- 하지만, 민선8기 시정변화로 본 조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참여예산 유형이 단일화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구단위계획형)이 자율 운영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23년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되었고, 구(區)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초기 우리 구(區)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서울형 협치'와 기초를 같이하고 있었던 만큼, 서울시 사업 일몰로 인하여 우리 구(區)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타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사업 등과 같은 구민의 구정 참여를 제고하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폐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사업은 민관협치 사업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던 바, 민관협치 사업 종료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인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8 호
----------	---------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시정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력 약화 및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1. 4.~1. 24./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